

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4] <개정 2026. 4. 28.>

다자투자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(제1조의2제14항 관련)

연번	납입대상	납입금액
1	다자투자자기금에 출연	6천만 미합중국달러
2	다자투자자기금에 출연	300만 미합중국달러
3	다자투자자기금에 출연	300만 미합중국달러
4	다자투자자기금에 출연	300만 미합중국달러
5	다자투자자기금에 출연	100만 미합중국달러

비고

1. "연번"이란 대통령령 제18778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 이후 다자투자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기금 순서를 말한다.
2. "납입금액"이란 다자투자자기금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.